

〈수시 공시〉

2022. 09. 19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하여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(단위:원)

발생일자	펀드명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2022. 9. 17.	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4,425,111,130	4,742,337,807	1,071.69

* 50억미만 시작일 : 2022년 8월 17일

2. 세부 내역

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협회표준코드1 (운용펀드)	협회표준코드2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
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	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A형	K55209BY4109	K55209BY4117	2022-09-17
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	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A-E형	K55209BY4109	K55209BY4125	2022-09-17
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	신영밸류중소형주30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C형	K55209BY4109	K55209BY4133	2022-09-17

3. 공시 사유 : 소규모 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